



정신질환 범죄자의 인권과 이상동기살인

박 철 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변에서 왜 요즘 살인 예고나 살해 협박 또는 실제로 발생하는 (뚜렷한) 이유 없는 살인이 급증하는지 나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살인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금전 관계, 보험 관계, 원한 관계, 애정 관계 등의 몇 가지만 조사하면 쉽게 그 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살인범죄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살인 범죄를 ‘묻지마 범죄’, ‘무동기 살인’, ‘무차별 살인’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부른다. 그러나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다. 단지 우리가 그 동기를 쉽게 짐작하기가 힘들 뿐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살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상동기살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살인의 동기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동기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내포한다.

이런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는 꼭 살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쇄방화나 연쇄강간, 연쇄살인 또한 대표적으로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런 범죄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왜곡된 환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범죄들이다. 예를 들어 불을 지르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야단법석의 상황에서 쾌감을 느낀다든지, 강간을 통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한다든지, 또는 살인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상황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 그 예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왜곡된 환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된 환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쉽게 깨어지지만, 일부의 사회적 외톨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쉽게 머리를 벗어나지 않고 새가 둉지를 틀고 살듯이 머리 위에서 점점 커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환상은 점점 더 강박적으로 행동을 채찍질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왜 최근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이 증가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사이버 세계의 확대와 일부 관련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게임, 학습, 친구들과의 수다, 회의, 쇼핑 등 우리들의 활동은 상당 부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이버 서비스의 장점 중의 하나는 내가

원하는 내용만을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고, 아무리 물리적으로 멀리 있더라도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TS의 팬클럽회원들은 지역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유사한 생각으로 뭉친 응집력 있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이버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테러의 증가는 이런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는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 세계에서만 활동하면서도 사이버 늑대들은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하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익명성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경악!', ‘좌절!', ‘손흥민 아직 결정' 등과 같은 자극적인 가짜뉴스나 거짓말은 이런 익명성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행동이나 거짓말도 쉽게 선택하게 만든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살인예고와 같은 한탕주의들은 이런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종들을 제외하면, 실제 발생하는 무동기 살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무동기 살인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런 무동기 살인 사건의 범죄자는 이전에 정신과 전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로 대부분의 정신병력자는 위험하지 않지만, 일부의 정신병력자는 공격성을 띠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통원하거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자나 정신병력자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강제입원이나 강제적 지역사회관리가 매우 느슨해졌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보호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을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서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판단으로 가능했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법 개정 이후 보호자 2명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명의 판단이 필요하도록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나, 강제 입원 결정절차의 강화, 위험한 정신질환자 수용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문제 있는 정신병력자가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살인의 증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의 취지는 이들을 치료를 통해서 덜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처벌에 보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약물중독자나 정신장애 범죄자를 보호구금하는 치료감호제도는 이들의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이 위험한 범죄

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욕구는 보통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는 거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최근 소위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경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정신병원을 퇴원했을 때 복용해야 되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데서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우 소홀히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자 전문 보호관찰관 제도나 정신건강법원과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s)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특수법원 중의 하나이다. 이 법원은 판사, 보호관찰관, 상담전문가, 치료전문가 등이 함께 팀을 이루어 대상자가 어떤 진전이나 퇴보를 겪는지를 매주 또는 매월 모여서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준수사항을 줄여주거나 오히려 추가하는 등의 제재를 통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활을 돋는다. 만약 대상자가 지시를 잘 따르고 큰 진전을 이룬다면, 법원은 이들에 대해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게 된다.

정신질환 범죄자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더라도 보통 감시가 거두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보

호관찰관 제도는 정신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훈련을 받은 보호관찰관이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저항에 대해 동정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의 신뢰를 얻고 프로그램에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들은 대상자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잘 맞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중개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들은 이들의 치료에 별 관심이 없는 한국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항상 상대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축소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관리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하면, 반대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예산의 확대는, 이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비한다면 훨씬 더싼 선택일 수 있다. 결국 어디에 우선권을 둘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와 위험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인본세상**